#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60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박정훈·고동진·김위상

배현진 • 안상훈 • 김형동

박상웅 • 박수민 • 김소희

박덕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070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10과 같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세관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가 적발되어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다 경찰에 적발된 발신번호 변작기는 2021년 500여 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1만 4천여 대,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6천 대를 넘긴 상황임.

이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 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 포, 판매, 대여하여서는"으로 한다.

제95조의2제5호 중 "제공한"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생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②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u>제공하여서는</u> 아니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	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 여서는</u>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95조의2(벌칙)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5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			

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u>제공한</u>자

-----<u>제공하</u> 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 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